

주요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목차

- I. 화재안전
- II. 낙상안전
- III. 감전사고 안전
- IV. 화상사고 안전
- V. 베임사고 예방
- VI. 충돌/끼임 사고 안전
- VII. 응급처치
- VIII. 산재요양 신청

I. 현황

I. 화재 안전

1. 화재의 종류

1) 일반화재(A급 화재)

- 가연물인 나무, 종이, 섬유류 등에 의한 화재(백색 표시)
- 화재발생빈도 및 피해액이 가장 큰 화재

3) 전기화재(C급 화재)

-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시설물이 타는 화재 (청색 표시)

2) 유류화재(B급 화재)

- 석유 등 가연성 액체의 유증기가 타는 화재(황색 표시)

4) 금속화재(D급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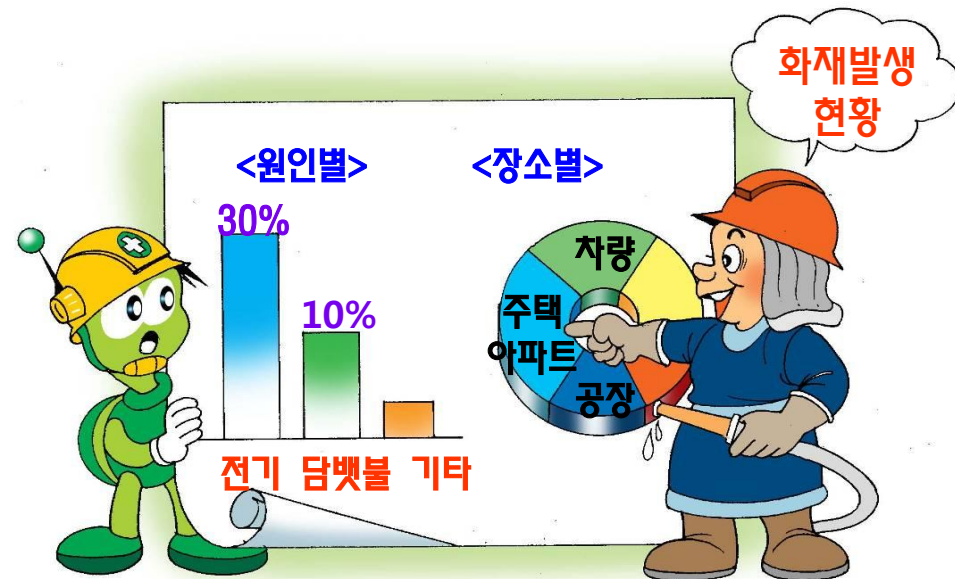
2. 화재의 발생 현황

1) 발생원인별 분석

- 전기(30%) > 담뱃불(10%) > 기타

2) 발생 장소별 분석

- 주택·아파트(30%) > 차량(20%) > 산업현장(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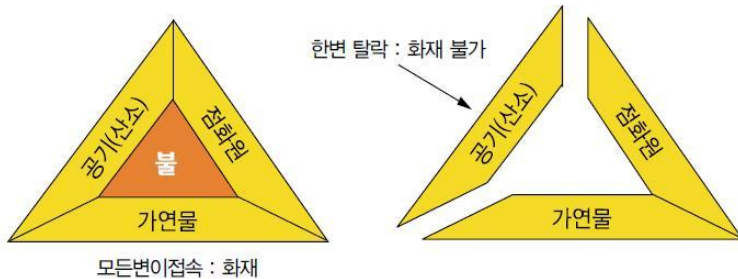
1. 화재 안전

3. 화재의 특성

- 1) 화재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2분 이내 대피).
- 2) 사망자의 경우 연기로 인한 것이 대다수 이다.
(전체 사망자의 2/3가 연기로 인한 것이다.)
- 3) 여름철 화재가 겨울철 보다 50% 많다.
(보양식 등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음식이 많다.)

4. 화재의 3요소

- 1) 불에 탈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 2) 공기(제거 불가능)
- 3) 열 및 불꽃과 같은 점화원



5. 소화기 사용 요령

- 1) 당김 : 핀을 당긴다.
- 2) 조준 : 불꽃의 바닥면을 조준한다.
- 3) 누름 : 소화기를 똑바로 세운 상태로 손잡이를 누른다.
- 4) 훑음 : 방출구를 불꽃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며 분무한다.



I. 화재 안전

6. 원인별 화재 예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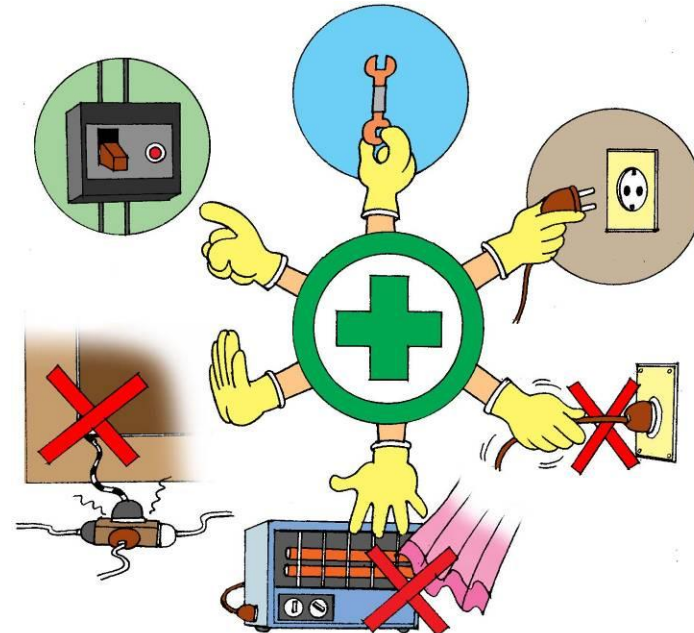
1) 전기 화재

▶ 주요 원인

합선 / 문어발식 코드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 누전/
접촉불량 / 정전기 / 제품 결함 / 취급 부주의 등

▶ 예방요령

-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 전기제품은 KS마크가 있는 것 사용, 정격용량의 전선 사용, 노후 전선 교체
- 누전차단기 설치
-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품 사용(철사 사용 금지)
- 평상시 불필요한 전원은 끄고, 퇴근시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아둬
- 전원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당기지 않음
- 전선이 문틈으로 통하거나 전기장판을 접지 않음
- 전기난로는 커튼 등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 설치



I. 화재 안전

2) 담뱃불 화재

- 전체 화재건수의 20% 정도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
- 유류보관소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흡연 금지
-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금지



3) 가스 화재

- 사용 전 및 외출 후 창문 개방 및 충분한 환기 실시
- 가스배관과 호스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이용,
누설여부 수시 확인
- 사용치 않을 시 가스레인지 조절기 및 중간밸브를 잠금



I. 화재 안전

4) 유류 화재

- 연료주입 시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깔대기를 사용
- 불이 붙은 채로 난로의 이동 금지
- 난로 주변에 빨래를 널지 않음
- 화기 주변에 작은 소화기나 모래주머니 3~4개 비치



5) 불티 화재

- 주변의 가연물 제거 후 작업
-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 및 물 양동이 비치



1. 화재 안전

◎ 소화기의 점검 요령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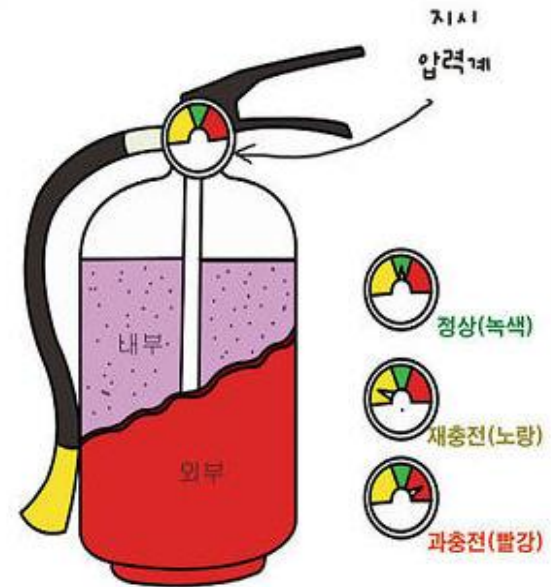
- 쉽게 사용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충약상태는 적당한가 ?

-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침이 **녹색**($7.0\text{kg}/\text{cm}^2 \sim 9.0\text{kg}/\text{cm}^2$)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

-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축압식소화기]

I. 화재 안전

7.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 ◆ 일반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 고층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I. 화재 안전

8. 연기가 많을 때 주의 사항

-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9.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주의 사항

-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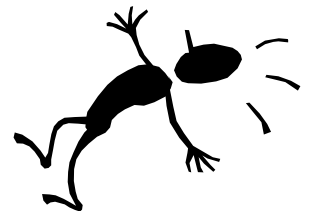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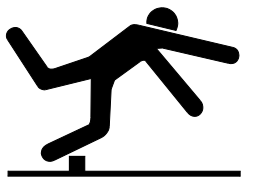


- ◆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II. 낙상 안전

1. 낙상사고의 원인

- 1)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 2) 시각 : 시각이 나쁠수록 증가한다.
- 3) 약물 : 졸음이 오도록 만드는 약을 복용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 4) 균형감각, 동작일치, 보행 및 운동능력 :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가한다.
- 5) 근육 : 근육이 약화된 경우, 넘어짐이 발생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해 증가한다.
- 6) 질병 : 심장이나 머리 혹은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쉽게 넘어질 수 있다.
- 7) 조명 : 너무 어둡거나 반사가 심한 바닥은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 8) 바닥 : 오염물질(물, 기름, 흙 등)이 있는 경우, 바닥이 닳은 경우, 정리정돈 안된 경우 증가한다.
- 9) 신발/양말 : 하이힐이나 특정 목적을 갖는 특수화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 10) 경력 :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넘어질 위험성이 증가한다.



II. 낙상 안전

2. 낙상사고 예방요령

- 1)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위험 발견 시 시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2) 바닥과 계단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
- 3) 바닥과 계단에서 부스러기와 장애물을 제거한다.
- 4) 마루 바닥청소와 처리에 미끄럼방지 왁스를 사용한다.
- 5)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화장실 출입구, 싱크대 앞 등에는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를 깐다.
- 6) 실내에 거주하더라도 항상 양말을 신고 활동 하도록 한다.
- 7) 폴리우레탄 재질로 된 걸창바닥을 갖는 실내화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8) 사다리 대용으로 회전의자나 발통이 달린 의자 또는 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9) 오븐, 식기세척기, 서랍 또는 찬장문을 열어 놓지 않는다.
- 10)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마치고 기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 세제를 이용하여 완전히 기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11) 바닥과 계단에 전선이나 호스 등이 널려있지 않도록 한다.



II. 낙상 안전

12) 수급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비누 등을 욕실바닥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를 목욕시키거나 욕조 청소를 할 때 수건 등으로 욕조의 모서리를 덮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물이나 주택의 출입구, 출입문에는 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전 턱이나 기타 장애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야간이나 집안 밖의 밝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출입구에서 좀 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16) 겨울철에 마당이나 계단 등에 눈이 쌓여 있을 경우, 눈을 즉시 쓸어내고 얼어붙은 경우 소금, 모래 등을 뿌려 제거하여야 한다.

17) 물건을 옮길 때는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여러 번에 걸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18) 조리실 청소 시 깨끗한 구역에서 오염된 구역으로 청소를 하고 세제를 이용할 경우 바닥에 있는 기름기가 녹아 나올 수 있도록 10~15분 정도 기다렸다 마지막 물청소를 한다.

19)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린 수급자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협동하여 배설도움 및 이동을 위한 부축을 하도록 한다.

20) 재가방문 시에는 넘어질 위험이 높은 신발(하이힐, 밑창이 얇은 신발, 특정 운동목적용 신발)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II. 낙상 안전

3. 낙상사고 사례



화장실 청소 중
대걸레를 짜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다 바퀴가
구르며 넘어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불을
갖고 계단을 내려
오던 중 헛디터
넘어짐



욕조 모서리를
밟고 수건을 선반에
올리려다
미끄러져 넘어짐



수급자를 목욕시키
고 나오다 출입구에
흘러있던 물을
맨발로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욕실 바닥에 놓여진
바지를 발로
밟고 바지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짐



휠체어를 밀고 문
턱을 넘던 중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밀다가 발을
삐끗하며 넘어짐

III. 감전사고 안전

1. 감전사고의 원인

감전은 일반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보다 물기가 있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물과 접촉이 많은 욕실, 부엌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더욱 주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욕실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부엌에서 전기밥솥, 믹서기, 토스터기, 커피포트 등의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콘센트에 접속할 때 감전사고발생

2. 감전사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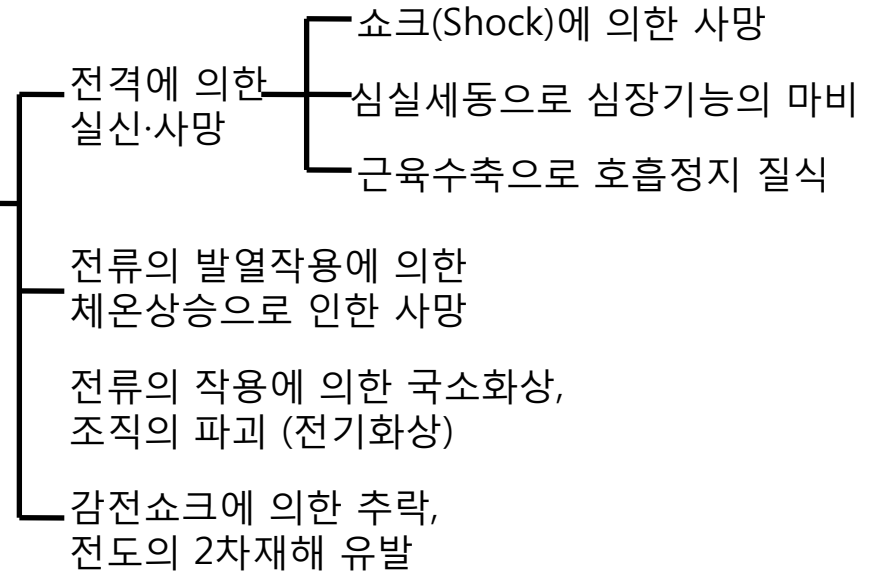
- 1) 전기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해 발생을 낮다.
그러나, 일단 재해 발생시 사망할 위험 높다
- 2) 무색/ 무취하여 느낌으로는 통전감지 못함
- 3)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 4) 항상 사용하여 중요성, 위험성 인식 못함
- 5) 감전사고 주된 유형
 - 노출된 충전부 접촉 발생
 - 비충전부의 누전부위 접촉 발생

※ 전격(電擊)이란?

- 인체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

3. 감전사고의 영향

감 전



통 전 경 로	위 험 도
왼손 - 가슴	1.5
오른손 - 가슴	1.3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1.0
양손 - 양발	1.0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0.8
왼손 - 등	0.7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0.7

III. 감전사고 안전

4. 감전사고의 예방요령

- 1)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 2)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접지)시켜야 한다.
- 3)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한다.
- 4)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 5)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6) 수동 개폐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7) 자동개폐기(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
- 8) 불량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9)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접속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10)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는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11)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집을 비울 때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 12)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기나 전열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13) 지하실 등이 침수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4)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전선이 일부 이탈되어 철대문이나 벽체에 접촉하여 누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이나 벽체에 전선이 접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II. 감전사고 안전

5. 감전사고 사례



- 1)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의 급수 수도꼭지를 틀어 놓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또한 세탁기 외함이 접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를 가동시키기 위해 접촉하였다가 감전
- 2) 세탁기의 외함접지를 수도꼭지에 하였으나 땅에 매설되어 있던 배관이 금속제 배관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접지가 되지 않아 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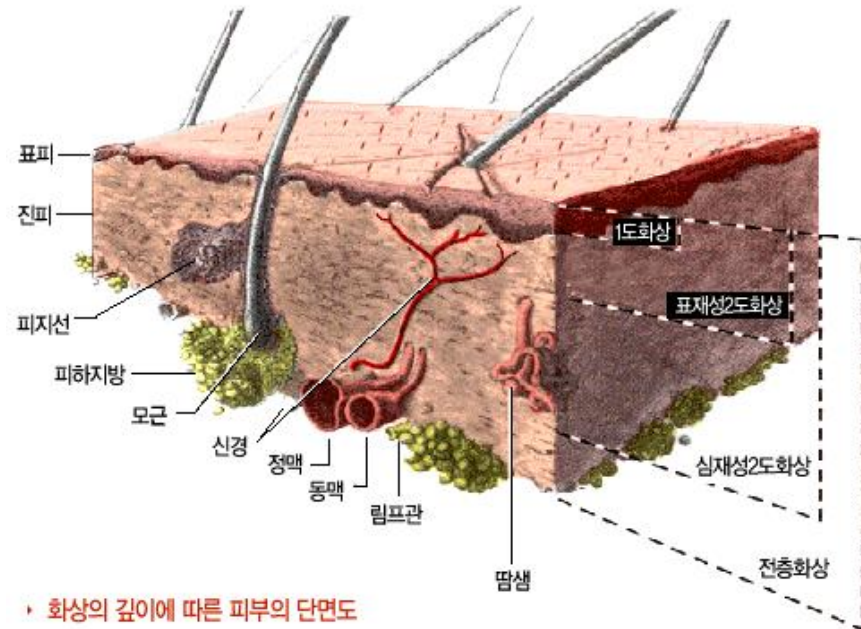


- 1) 여름철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다 충전부(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손을 접촉하여 감전.
- 1) 외국의 경우 전기 모기채를 인화성 물질 부근에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IV. 화상사고 안전

1. 화상사고의 원인

요양기관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화상은 매년 증가하는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가열된 기름이나 국물이 튀어서 발생**하거나 가열된 그릇을 맨손으로 접촉하여 발생한다. 또한 시설에서 다량의 국물을 운반하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부상과 달리 화상은 가끔 매우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게 된다. 또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재해에 다르게 손실이 매우 큰 재해이다.



2. 화상의 종류

구분	특성	화상정도
화염화상	화재사고나 가스폭발로 인한 불꽃에 의한 화상, 상처가 깊고 호흡기 손상을 동반	중화상
열탕화상	뜨거운 물, 식용유, 수증기에 의한 화상	주로 2도화상
전기화상	전류에 감전되어 발생, 가정용 전압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각한 후유증 유발	
접촉화상	뜨거운 철판, 다리미, 전기장판에 장시간 노출	주로 3도화상
화학화상	산, 알칼리 및 일반 유기용제에 접촉해 발생	



IV. 화상사고 안전

3. 화상의 정도

- 1) 제1도 : 화상을 입은 부분의 피부가 빨갛게 붓고 화끈화끈 아프다.
- 2) 제2도 : 빨갛게 붓고 아플 뿐만 아니라 수포가 생긴다.
- 3) 제3도 : 화상의 정도가 심해 피부가 타 짓물러 죽게 되거나, 불구가 된 사람, 상처 자리가 도리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나아도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4. 화상사고 예방 요령(1)

- 1) 모든 그릇과 팬 그리고 금속 손잡이는 뜨겁다고 생각하고 주방장갑을 이용하여야 한다.
- 2) 뜨거운 물체와 화염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조리작업, 목욕물 데우는 작업, 삶기 작업 등은 작업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 3) 뜨거운 버너로부터 용기손잡이를 멀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4) 뜨거운 물체를 다루기에 적합한 오븐용 긴 장갑을 사용한다.
- 5) 장비의 조작은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 6) 요리형태에 적합한 권장 온도만을 설정한다.

IV. 화상사고 안전

4. 화상사고 예방 요령(2)

- 7)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액체가 담긴 그릇의 뚜껑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천천히 연다.
- 8) 작업자 자신이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입구가 향하도록 하여 뚜껑을 연다.
- 9) 긴 소매의 면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
- 10) 결함이 있는 그릇이나 조리기구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11) 그릇이나 팬에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채워 넘치게 하지 않는다.
- 12) 조리 시 그릇과 팬에 금속 수저를 놓지 않는다.
- 13)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고 튀김작업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은 충분히 해동시켜야 한다.
- 14)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억지로 손을 뻗지 않는다.
- 15) 뜨거운 주전자의 뚜껑을 열기 위해 젖은 천(행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 16)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기와 스팀 오븐을 열지 않는다.
- 17) 음식 배식 때에는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튀더라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앞치마, 긴 장갑 등을 갖추도록 한다.

IV. 화상사고 안전

4. 화상사고 사례



배식대에서 국을
배식하다가 실수
로 국자를 놓치면
서 뜨거운 국물이
튀어 손등에 화상



조리실 끓는 국을
배식대로 옮기다
가 국물이 넘쳐
오른쪽 팔에 화상



성분이 강한 세제
로 주방청소를 하
던 중 피부가 노출
되어 화학적 화상



냄비의 손잡이를
팔꿈치로 건드려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에
화상

V. 베임사고 안전

1. 베임사고의 원인

베임 사고는 **조리과정에서 주위 작업자와 잡담**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 실수를 하거나 급히 서두르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깨어진 유리그릇을 설거지 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다 베이는 경우가 있으며 가끔 참치 캔 뚜껑과 같은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베이는 경우도 있다.



2. 베임사고의 예방요령(1)

- 1) 안전한 절단 및 썰기를 위해 도마를 이용한다.
- 2) 장비 작동과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확실히 받도록 한다.
- 3) 장비의 작동, 청소 및 관리는 사용지침서를 참조한다.
- 4) 절단 칼날이 날카로운지 확인한다.
- 5) 부서지거나 금이 간 유리제품은 폐기한다.
- 6) 청소 후 모든 방호물과 안전 장비에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감독자에게 알린다.
- 7) 몸이 좋지 않거나 나른할 경우에는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V. 베임사고 안전

2. 베임사고의 예방요령(2)

- 8) 절단 칼날 근처에 손을 놓지 않는다.
- 9) 떨어지는 물체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 10) 이송용 호퍼 또는 이동용 슈트에 손을 밀어 넣거나 놓지 않는다. 밀대를 이용하여 밀어 넣는다.
- 11) 너무 얇게 썰지 않는다.
- 12) 이동 기계에 휘말릴 수 있는 헐거운 옷이나 헤어진 옷, 장갑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 13)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한다.
- 14) 조리작업에 적합한 베임 방지용 장갑 등을 이용한다.



VI. 충돌/끼임 사고 안전

1. 충돌/끼임사고의 원인

시설의 경우는 휠체어나 침대 등의 이동 시 충돌, 가구, 상, 의자 등에 부딪치거나 문틀, 철문 등에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과 문틀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도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 충돌/끼임사고의 예방 요령

- 1) 선풍기 등은 안전망을 씌워 사용한다.
- 2) 대차, 휠체어 등을 밀 때에는 손잡이 안쪽을 잡도록 하고 문의 크기가 대차나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인지 미리 확인한다.
- 3) 문틈이나 문과 문틀의 틈새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재를 설치한다.
- 4) 문이나 벽체의 모서리에는 충격 방지용 부착물을 설치한다.
- 5) 대차나 침대 모서리에는 충격 방지물을 부착한다.
- 6) 음식배식 때에는 먼저 출입문을 고정하고 배식한다.
- 7) 바람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먼저 닫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8)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를 방문이나 출입문에 설치한다.
- 9) 침대를 이동시키거나 위치를 잡을 때 무릎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10) 청소 작업, 이송작업 등을 수행할 때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수행한다.

VI. 충돌/끼임 사고 안전

3. 충돌/끼임사고 사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창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창문에 끼어 골절



맞은편에서 오던 카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카트의 손잡이가 가슴을 침



무릎으로 침대를 밀다가 갑자기 두둑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며 부상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화장실 문틀 사이에 끼어 부상



병실 청소를 하다 반대편으로 돌아서던 중 침대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혀 부상



요양환자의 식사를 운반하다가 왼손이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손가락 골절

VII. 응급처치

1. 심폐소생술 절차

의식확인



119신고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기 사용



환자와 이격



VII.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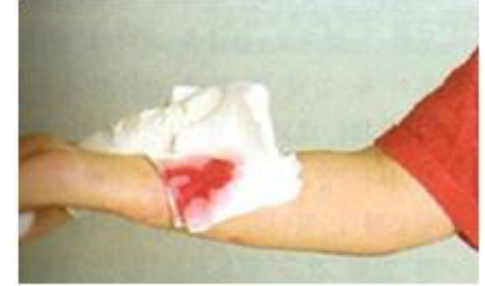
2. 출혈지압법



(1) 직접압박



(2) 압박붕대이용



(3) 드레싱



(4) 대용품이용



(5) 상처부위 높임



(6) 압박점 지혈

VII. 응급처치

3. 외출혈의 경우

- ① 직접압박. 10분이 지나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상처 부위를 넓혀 더 세게 압박한다.
- ② 압박붕대를 감아놓은 후 부상부위나 다른 부상자를 처치할 수 있다.
- ③ 피에 젖은 드레싱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 위에 새 드레싱을 덧댄다.
- ④ 일회용 장갑이 없으면 깨끗한 헝겊(거즈)이나 비닐봉지를 덧대어 사용할 수 있다.
- ⑤ 출혈이 계속 되면 상처부위를 높여서 지혈한다. 이때 직접압박을 동시에 실시한다.
- ⑥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 점을 눌러 지혈한다. 동시에 상처 부위에 직접압박을 가한다. 압박의 위치 : 가. 상완동맥 압박 점 / 나. 대퇴동맥 압박 점

4. 내출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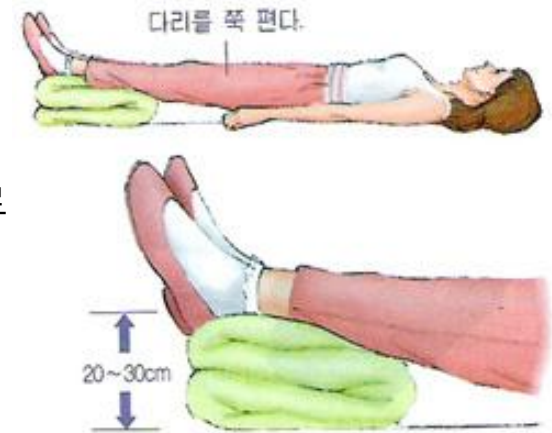
- ① 가-호-순-장을 점검한다.
- ② 구토에 대비한다. 만약 부상자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안쪽으로 돌려 눕힌다.
- ③ 쇼크에 대비하여 부상자의 다리를 20~30cm정도 들어 올려주며, 코트나 담요 등으로 부상자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 ④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VII. 응급처치

5. 쇼크의 경우

부상자가 쇼크의 징후와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응급 처치자는 쇼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나 다른 심한 부상을 치료한다.
- ② 부상자를 똑 바로 눕힌다.
- ③ 부상자의 다리를 20~30cm 정도로 올려주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 ④ 담요나 옷을 바닥에 깔고 부상자를 덮어주어 체온 손실을 막는다.



6. 개방성 상처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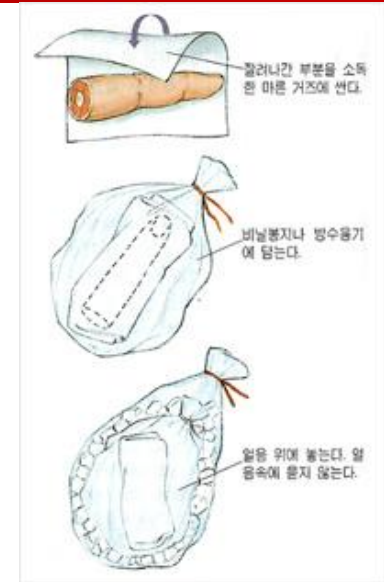
- ① 상처를 만지기 전 의료용 장갑을 끼고 감염되지 않게 조심한다.
- ② 상처를 보기 위해 옷을 벗기거나 잘라 제거한 후 피가 나는 곳을 확인한다.
- ③ 직접압박 등을 통해 지혈을 한다.
- ④ 상처를 씻는다.
- ⑤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물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VII. 응급처치

7. 절단사고의 경우

- ①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하고 사지를 높게 올린다.
- ② 절단 부위를 찾아 되도록 부상자와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 ③ 절단 부위를 처치할 경우
 - 깨끗한 물로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 살균한 마른 거즈나 기타 깨끗한 천으로 싼다.
 - 비닐봉지나 컵이나 유리잔에 담는다.
 - 절단 부위를 담은 비닐봉지나 용기는 얼음 위에 놓는다.



잘려나간 부분의 처치

8. 화상의 경우

- ①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15분간 열기를 식혀야 한다.
- ② 화상 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의복 및 양말 등을 조심스레 제거해야 한다.
- ③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체 표면의 20%이상 차갑게 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소주, 된장, 간장 등 민간요법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 ⑥ 최대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VII. 산재 요양 신청

재해 발생

병원 이송 (입원, 통원)

요양 대상

사망

요양
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사업장 관할 지사(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제출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구비서류 1. 초진소견서[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 재해경위 등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서류

-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 사업장 관할 지사
- 산재승인 후 요양 중 사망 시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여 사체를 부검한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유족
급여
청구

업무상
인정
여부
심의

-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상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발생한 재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 심 의 - 사고성 재해는 사업장 관할지사에서 조사 후 결정
- 업무상질병은 사업장 관할지사에서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
- 처리기간 - 사고성 : 최초요양 7일, 유족급여 10일
- 질병성 : 사고성 재해 기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약 30일 정도 추가
☞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업무상
인정
여부
심의

결정통지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결정통지

급여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치료비 - 요양급여 인정기준 범위에서 지급
- 간병료 - 근로자의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이송비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지급(월척)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그 차액을 지급
- 장 의 비 -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실행한 유족에게 지급

급여
지급

-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결정통지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결정통지

급여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치 료 비** - 요양급여 인정기준 범위에서 지급
- **간 병 료** - 근로자의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이 송 비**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지급(원칙)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그 차액을 지급
- **장 의 비** -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실행한 유족에게 지급

급여
지급

-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결정통지

장해
보상
청구

- **지급대상** - 장해상태에 따라 1~14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 장해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연금선택자의 경우 지급된 연금의 50%를 선급할 수 있음
 - ※ 장해등급 1급~3급 : 1년에서 4년 선급
 - ※ 장해등급 4급~7급 : 1년에서 2년 선급

- **인정기준** - 장해등급기준[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6)]

- **장해심사** -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관할 지사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지사에 제출
 - 심사일자를 지정하여 장해상태 심사
 -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경우 자문의사회의 심의 또는 특별 진찰 실시

- **처리기간 10일** -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보완 및 특별진찰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1. 방사선필름(MRI, CT, X-ray 등)
2. 기타 장해상태 입증에 필요한 검사 결과지

- 구체적인 보상절차는 1588-0075로 연락주시거나, 담당직원을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한국 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재·고용보험에 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본부별 상담 일정

상담지역	상담요일	상담시간	상담자	전화번호
서울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2-2230-9551
부산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51-661-0255
대구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53-601-7138
경인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32-451-9396
광주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62-608-0291
대전본부	화, 목	13:00~17:30	공인노무사	042-870-9540

장해
급여지급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 제기

사 회 복 귀

유 가 족 복 지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